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기재된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전문공보관 형사1부장 이지현
전화 054-429-4224 팩스 054-429-4675

보도자료
2023. 1. 17.(수)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엄단
제 목 - 4개월간 위증·무고사범 총 18명 적발, 반복무고사범 1명 직구속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진정길)은 '23. 10. ~ '24. 1. 4개월간 위증, 무고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총 18명을 적발하여, 그중 무고사범 1명을 직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5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2명 수사 중)
 - 특히,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각각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6회에 걸쳐 성범죄 허위 고소를 반복한 무고사범 1명을 직구속 기소하고,
 - 구미 폭력조직의 범죄단체활동 사건과 관련하여 위증 및 위증 방조 사범 총 4명을 입건하고 그중 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1명 수사 중)
- 김천지청은 앞으로도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철저히 엄단하여 사법 신뢰 회복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임

I

사법질서 방해사범 수사 배경

- 법정에서 거짓말로 증언하는 '위증사범', 선량한 타인이 처벌받도록 허위로 고소하는 '무고사범' 등 이른바 '사법질서 방해사범'은 실

체 진실을 왜곡하여 정당한 형사법 집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 범죄임

- 특히 위증사범의 경우, 최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반복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증가하였는바, 이는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시키는 것으로서 자칫 사회에 **‘자백하면 처벌받고 부인하면 면피한다.’**는 그릇된 풍조가 만연해질 위험이 있음
- 이에 김천지청은 올바른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하고자 집중 수사를 실시**하였음

II 수사 결과

- '23. 10.부터 '24. 1.까지 약 4개월간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명을 적발**하였으며,
 - 구체적으로 무고사범의 경우, 6회에 걸쳐 성범죄 허위 고소를 반복한 무고사범 1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2명을 인지하여 기소**하고,
 - 위증사범의 경우, 구미 폭력조직의 범죄단체활동 사건과 관련하여 위증 및 위증방조 사범 총 4명을 입건한 것을 비롯하여,
 - ① 어긋난 의리로 조직폭력배, 공무집행사범에 대한 재판을 방해한 사례, ② 마약 투약장소 제공 사범을 숨겨 향후 마약 범행 가능성을 이어가려 한 사례, ③ 수집된 증거자료를 치밀하고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위증사실을 규명한 사례, ④ 증인 모두가 담합하여 위증한 사례 등에서 **위증사범 총 16명을 적발**하고, 그중 **14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2명 수사 중)

III 무고사범 수사 대표 사례

채팅 어플 등을 통해 알게 된 6명에 대해 6회에 걸쳐 성범죄로 허위 반복 고소를 일삼은 무고사범을 직구속 기소한 사례

- [사안의 개요] A가 채팅 어플 등을 통해 알게 된 6명의 피무고인들로부터 각각 강간 또는 강제추행 당하였다는 취지로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함
- [수사 내용] A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A가 성범죄 허위 고소를 반복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직접수사를 실시하였고, 경찰이 불송치로 종결한 별건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총 6건의 무고 혐의를 인지한 후 A를 구속 기소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무고사범을 엄단하였음

IV

위증사범 수사 대표 사례

① '어긋난 의리'로 조직폭력배의 범행 재판 및 경찰 상대 공무 집행방해 재판을 방해한 사례

[사례 1]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공범인 선배조직원의 범죄단체활동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사례

- [사안의 개요] ① 원 사건 요지: 피고인 A는 구미지역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조직원들이 피해자 B를 난자한 공동상해 범행에 가담
② 위증 범행 요지: 과거 활동을 함께한 후배조직원 C, D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 등 선배조직원들의 가담 사실에 대해 “잘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허위로 증언함
- [수사 내용]
 - 1) 과거에 진행된 관련 공범들의 별건 기록을 대출하여 검토한 결과, 증인 C가 최초 수사 단계에서 영상녹화 조사 도중 사건 장소 약도를

그리고 계보도를 작성하는 장면을 발견하는 등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구체적 진술, 수사협조 내용 확인

- 2)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 A와 사건에 관해 의논하며 '진술을 모두 묵살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직원 E가 증인 D를 만나 일을 다 봐놓았다'고 말하는 내용을 확인하여 위치 정보 확인을 통해 실제로 E가 D와 만난 사실을 파악
- 3) 나아가 증인 D가 이전에 다른 사건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가 두루뭉술하게만 말하면 알아서 해줄테니 협조하면 징역을 깎아주겠다고 회유해서 허위로 제보를 한 것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작출하여 위증하는 등 증언 대부분을 위증한 사실 확인
- 4) 최초로 제보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의 진술을 청취하여, 증인 D가 과거 본인 사건으로 체포된 직후 감형을 노리고 먼저 협조하겠다고 조사요청한 사실과 스스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D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를 자백함

※ 위증 동기: ① 형이 크게 감형될 것으로 기대하고 제보하였으나 공범들과 같은 형을 선고받자 화가 나 태도를 바꿈, ② 제보 이후 본인과 가족들의 신변에 대한 위협을 받고, 배신자로 낙인찍혀 고향을 떠나게 되었으며, 사건을 제보한 것을 후회하고 이를 주워담기 위해 위증하였다고 진술

- 5) 연이은 수사를 통해 증인 C, D의 위증 사실을 비롯하여, 직원 E가 증인 D의 위증을 방조한 사실, 증인 F의 증언 또한 위증에 해당함을 밝혀내고 C 등을 각 불구속 기소함

[사례 2] 경찰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현장에 있던 지인들이 진술 거부권 고지 여부를 위증하여 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왜곡한 사례

- [사안의 개요] 피고인 A가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현장에 함께 있었던 A의 지인인 B, C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이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고

A를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함

- [수사 내용] 경찰 바디캠 영상 등 제반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경찰관이 A를 체포할 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 증인 B, C의 위증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통해 B, C가 지인인 A의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한 사실을 확인하고 B, C를 각 불구속 기소함

② 마약 투약장소를 제공한 공범을 숨기기 위한 목적 등으로 위증한 사례

[사례 1]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한 방조범을 숨기기 위해 위증한 사례

- [사안의 개요] 공범들이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할 수 있게 장소를 제공하여 방조한 피고인 A의 마약 사건 재판에서, 당시 마약을 투약한 공범 B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A는 제가 마약 투약하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함
- [수사 내용] 증인 B와 피고인 A 사이의 휴대폰 메시지 내용, 영상 녹화 조사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B가 자신의 진술로 인해 피고인 A가 처벌받게 되는 것을 피하려고 위증한 사실을 확인하고 B를 약식 기소함

[사례 2]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할 목적으로 위증한 사례

- [사안의 개요] 피고인 A와 공범 B가 공모하여 주점 여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시킨 마약 사건에서 공범 B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필로폰을 넣은 것은 피고인 A이고 자신은 이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함
- [수사 내용] 사건 당일 A와 B가 주점에 출입하는 CCTV 영상에서 공범 B가 가방을 들고 있던 점, 사건 이전에 A와 B가 서로 필로폰 사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점 등을 통해 위증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후 B는 본인 사건의 재판에 출석하여 위증 혐의를 인정하며 공소 사실을 번의 자백하기도 하여, B를 약식 기소함

③ 수집된 증거자료를 치밀하고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위증사실을 규명한 사례

[사례 1] 인터넷 방송 BJ가 시청자들로부터 사이버머니를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 공범인 동료 BJ와 매니저가 위증한 사례

- [사안의 개요] 인터넷 방송 BJ인 피고인 A가 이른바 ‘허위의 멸망전 (BJ에게 사이버머니를 후원하며 특정 시청자의 강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놀이)’을 통해 시청자들로부터 사이버머니를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 동료 BJ인 B와 매니저 C가 “A는 허위의 멸망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함
- [수사 내용] B와 C는 법정에서 2회에 걸쳐 증언하였는바 증언 과정에서 모순되게 진술한 부분을 파악하고, 특히 피고인 A와 엔터테인먼트 대표 D 간의 통화 녹음파일을 면밀히 분석하여, A와 D가 사전에 ‘허위의 멸망전’을 계획하였음을 포착하고 B, C의 위증 혐의를 밝히고 B, C를 각 불구속 기소함

[사례 2]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절취한 사건에서 절취한 석유량에 대한 입증을 방해하고자 위증한 사례

- [사안의 개요]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고 시가 약 16억 원 상당의 경유 110만 리터를 절취한 피고인들의 송유관관리법위반 사건에서, 공범 A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절취한 석유량을 감축시킬 목적으로 절취 석유 판매 방식에 관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2023. 2.경 이후로는 절취 석유를 탱크로리를 이용해 밀거래하지는 않았다.”고 허위 증언하며 절취 석유량 특정 방법 중 ‘2023. 2.경 이후 탱크로리 판매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수사 내용] 사경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 등 추가 증거를 끈질기게 탐구하여 증인 A의 증언에 배치되는 증거를 확보하고, 특히 A가 사건이 적발되고 제3자 B와 통화할 당시의 녹음파일에서 2023. 4.경에도 탱크로리를 통해 절취석유를 밀거래한 정황을 포착하여 위증 사실을 밝혀내고 A를 약식 기소함

④ ‘공모사실 관련 담합형’ 위증 사례

[사례] 조합원들에게 광범위하게 현금을 살포한 조합장선거 후보자 사건 관련 위증 사례

- [사안의 개요] 조합장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피고인 A가 다수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을 제공한 피고인 A, B, C의 위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A, B, C가 각각 변론 분리하여 서로의 사건에 대해 증언하면서 공모 관련 제반 사실관계를 전부 부인함
- [수사 내용] 관련 CCTV 영상, 위 3인의 통신 내역, 압수된 휴대폰 분석 내용, 다른 공범들의 진술 등을 검토하여 위 3인이 합심하여 ‘A는 현금 전달 사실을 전혀 몰랐다.’, ‘B와 C의 현금 전달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위증하였음을 확인하고 A, B, C를 각 불구속 기소함

V

수사의의 및 향후계획

- 김천지청은 앞으로도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철저히 엄단하여 사법 신뢰 회복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임 ☑